

ISSUE BRIEFING

2019. 05. 20
Vol. 195

2019

ISSUE BRIEFING

연구진

장세길_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국가기념일 제정과 국가기념식 개최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방향 모색

국가기념일 제정과 국가기념식 개최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방향 모색

CONTENTS

| | |
|------------------------------|----|
| 0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의의 | 02 |
| 02 기존 기념사업의 한계와 과제 | 04 |
| 03 현대적 계승사업을 위한 제언 | 07 |

이 글은 2019년 5월 9일 전북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기념 공동세미나'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임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절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약

- 지역별 역사적 사건의 ‘기념’이 기존의 동학농민혁명 사업 방식(1.0)이라면 국가기념식 개최를 분수령으로 삼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현재에 실천하는 국가 주도의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2.0)이 추진되어야 함
- 현대적 계승을 위한 사업 방향으로 첫째, 국가 주도의 계승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기계획 수립과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함
- 둘째,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기념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념사업을 연계하면서 계승사업으로 이끌 구심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 설립·운영 중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해야 함
- 셋째, 동학농민혁명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조사·연구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담당할 독립적 조직과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 넷째,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전수조사하고, 각 유적을 대상으로 시급성, 원형 보존성, 역사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야 함
- 다섯째,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려는 기획된 상(像), 특히 가슴 뜨거운 분노와 자긍심을 기반으로 하는 감성적 계승사업을 위한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며, 동학농민혁명의 브랜드 정체성으로서 ‘한국민주주의 뿌리’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여섯째, 기념·계승사업이 특정 장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예, 기념공원 조성, 기념 시설 건립)에 집중하면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에 잠잠해진 지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으므로, 현대적 계승사업은 특정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시민교육 사업에 집중해야 함

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의의

◎ 1994년 논의 이후, 25년 만에 국가기념일 제정

- 국가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해야 한다는 제안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인 1994년에 시작되었으나,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이 제정된 2004년부터임
- 특별법에 근거하여, 관련 단체들은 지역별로 이뤄지는 기념행사를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가치인 자유·평등·개혁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해야 한다면서 국가기념일 제정을 요구함
- 하지만 지역과 단체별로 원하는 국가기념일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난 2019년 2월에 황토현 승전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됨

[표 1] 지역 및 단체에서 제시한 국가기념일(안)

| 역사적 사건별 기념일(양력) 제안 | 기념일 제정 이유 |
|--------------------|---|
| [02.14.]고부봉기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농민혁명의 단초, 고부봉기 발발 • 고부군수의 학정과 수세징수 폭정 대항 • 고부관아 점령, 악질향리 징벌 |
| [04.25.]무장기포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인 혁명 봉기의 시작 • 무장포고문 발표 • 전봉준과 손화중(최대 접주)의 만남 |
| [05.01.]백산대회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농민군 조직 정비 • 전봉준 총대장 등 동학농민군 지휘체계 확립 |
| [05.11.]황토현전승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농민군의 첫 전승지 • 부패하고 무능한 봉건군대에 대항 • 1천3백여명의 연합감영군 섬멸 |
| [05.31.]전주성점령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심장부, 전주성의 무혈입성 |
| [06.11.]전주화약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화약과 폐정개혁안, 집강소 합의 |
| [10.08.]2차봉기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침략에 따른 국권 수호를 위해 총봉기 |
| [12.05.]우금치전투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명의 마지막 승부, 동학농민혁명 최고·최대의 격전지 • 30만명(추정) 이상의 농민군 전몰 |
| [03.05.]특별법공포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일 • 국가에 의한 정신선양사업의 시작점 • 지여 간 갈등이 생기지 않는 날 |

자료 : 김양식(2019),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의의", 31p 참조

국가기념일 제정과 국가기념식 개최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방향 모색

[표 2] 최종 확정된 국가기념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기념일)의 별표

| 기념일 | 날짜 | 주관 부처 | 행사 내용 |
|------------|--------|---------|---|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 05.11. | 문화체육관광부 |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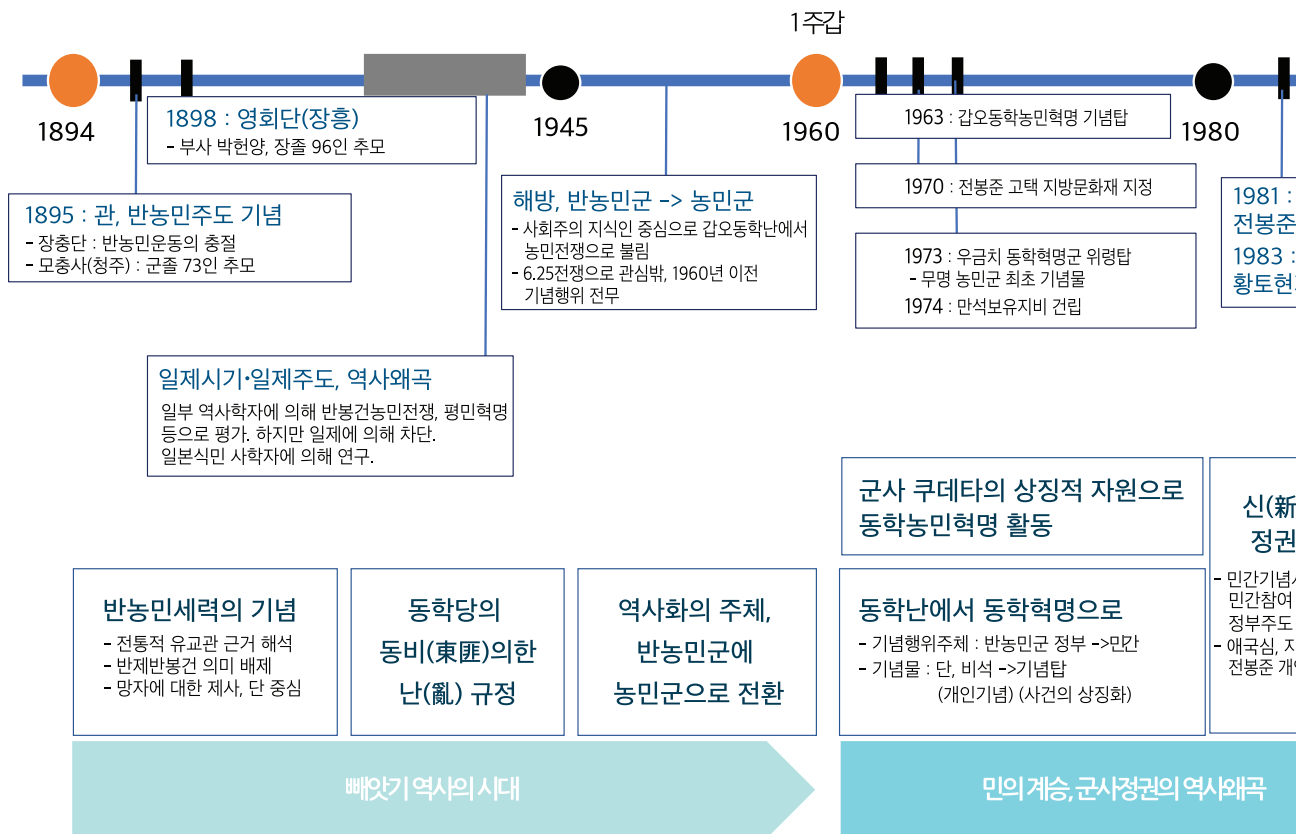
◎ 지역 간 갈등 해소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현대적 계승 기대

- 정부에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고, 정부가 주관하여 기념식을 개최했다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가 국가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하며, 정부가 인정한 역사적 가치가 현대적으로 계승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기념사 : “사람을 하늘처럼 받드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의로운 혁명이 125년 만에 비로소 합당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 (중략) … 동학농민혁명은 우리의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민중항쟁이었습니다.”
- 기념일 제정을 둘러싸고 지역 및 단체 간 대립이 첨예하였으나, 기념일 제정 이후에 갈등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전국적인 기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계승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시급하게 요구되는 조사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까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임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국가기념일은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존 기념사업의 한계와 과제

◎ 국가의 무관심 속, 개별적인 지역 행사 중심

- 1주갑이 될 때까지 동학당의 난(亂)으로 인식되었으나, 1960년 이후 군사쿠데타정권 및 신(新)군부 상징 자원으로 활용되면서 동학 ‘난’에서 동학 ‘혁명’으로 인식됨
- 100주년이 되어서야 왜곡됐던 역사가 바로 서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이 제정되고 특수법인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되면서 기념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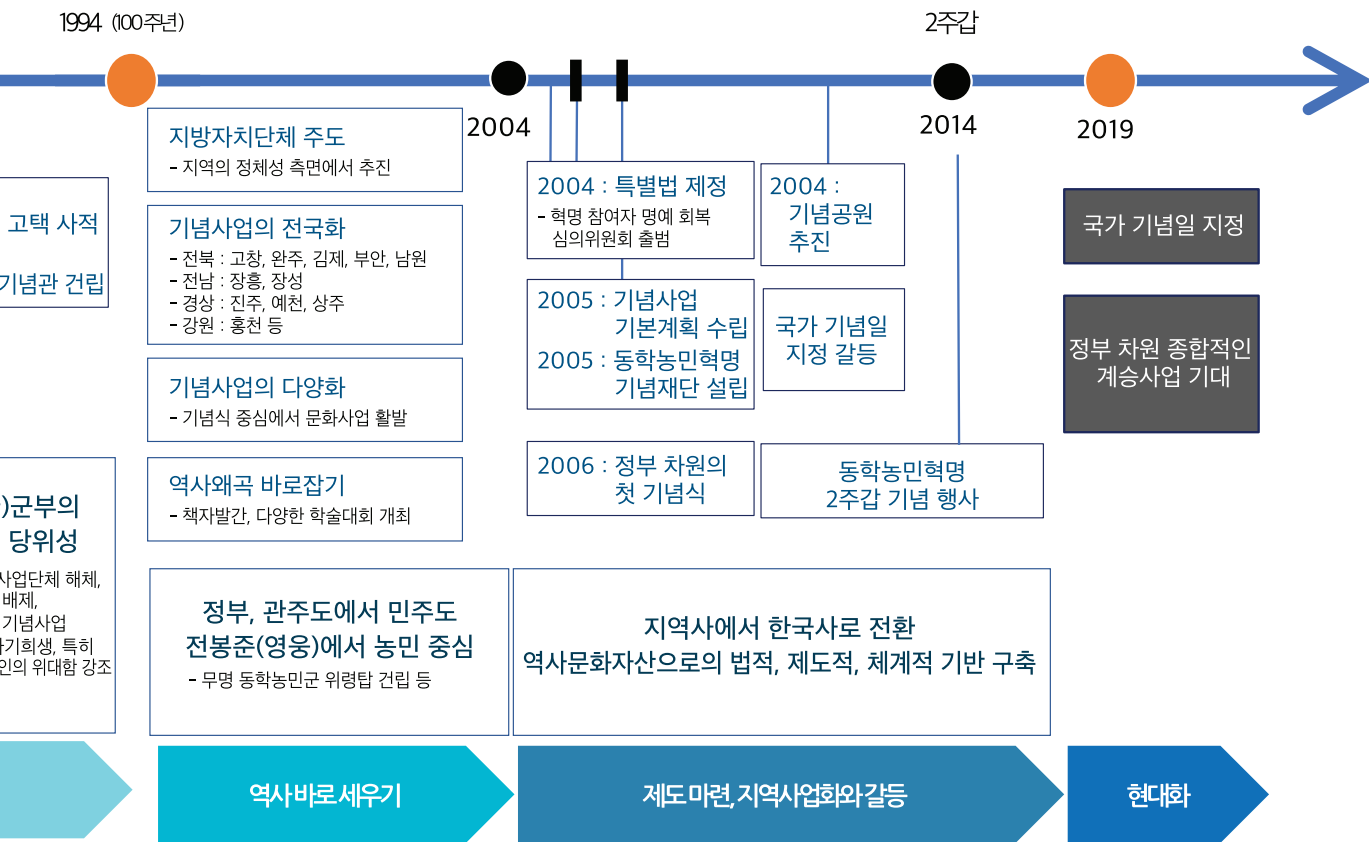


[그림 1]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국가기념식 개최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방향 모색

• 하지만,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행사성 사업이 대부분이며,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나 관련단체에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거나 일부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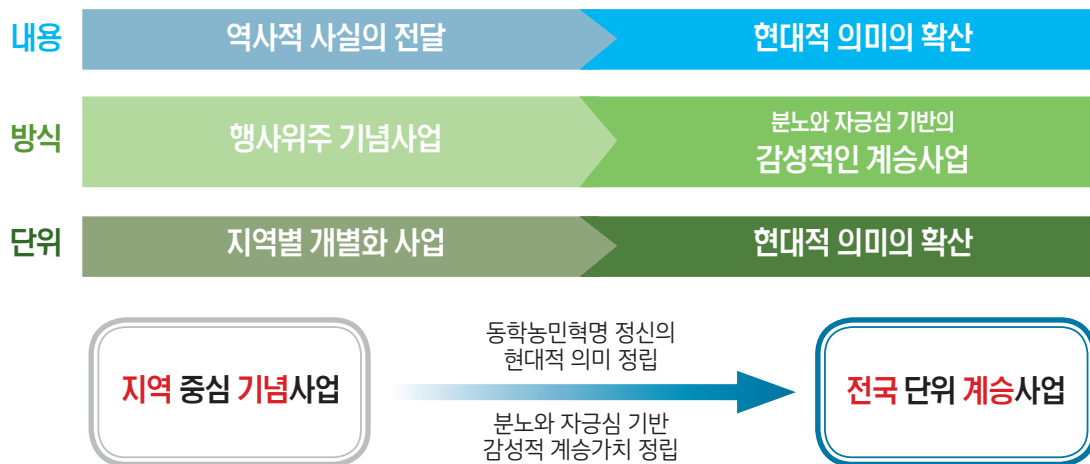
- 정부에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1998년 10월 26일 확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계획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관심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0년 미완료 사업으로 종료되었고,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정부에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들어 다시 추진됨



기념사업 전개 과정

◎ 기념식 개최 이후, 국가 차원의 현대적 계승 사업 필요

- 국가기념일 제정과 국가기념식 개최 이후에 동학농민혁명의 기념과 계승을 위하여 정부가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
 - 정부가 주최한 첫 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간과 지자체와 정부는 동학혁명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과 유적 복원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현재에 ‘계승’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모색되어야 함
 - 기념(記念)은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김”, 계승(繼承)은 “선대의 업적, 유산, 전통, 지위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 나감”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현대사회에서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계승’이 적절함
- 첫째, 역사적 사실의 전달이 아닌 현대적 의미의 확산이 필요하며, 둘째, 행사 위주의 기념사업을 탈피하고 분노와 자긍심 기반의 감성적인 계승사업이 개발되어야 하며, 셋째,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사업에서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전국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함
- 지역별 역사적 사건의 ‘기념’이 기존의 동학농민혁명 사업 방식(1.0)이라면 국가기념식 개최를 분수령으로 삼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현재에 실천하는 국가 주도의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2.0)이 요구됨



[그림 2]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계승 영향

3. 현대적 계승사업을 위한 제언

◎ 국가 주도 계승사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법률 개정

- 2005년에 수립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위한 기본계획(기념공원 조성계획 포함)과 2013년에 수립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행사 기본계획’ 외에 국가 또는 기념재단에서 수립한 종합계획이 없음
 - 2013년에 수립된 계획은 1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단년도 계획에 불과함
-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에 국가 주도의 계승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기계획 수립과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함
 - 2020년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계획기간이 2021~2025년이 되기 때문에 2020년에는 국가기념식을 제외하고 국가 주도 사업이 없을 수 있으므로, 종합계획 수립과 별도로 국가 주도의 전국 단위 계승사업을 구상하여야 함
- 다만, 현재 동학농민혁명특별법에는 기념사업(제8조)이 기념물과 기념공간, 학술연구 및 교류, 유적지 정비,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으로 국한되어 있어 특별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자칫 현대적 계승사업이 누락될 수 있음

[표 3]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이 규정하는 기념사업의 내용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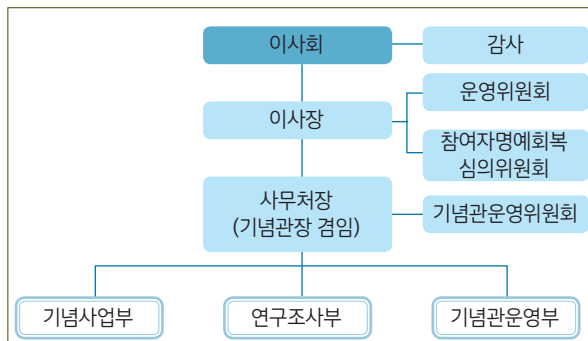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대적 계승사업이 체계적으로 담겨지도록 기념재단 및 관련단체,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함
 - 동학농민혁명특별법에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 단위로 종합계획(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명시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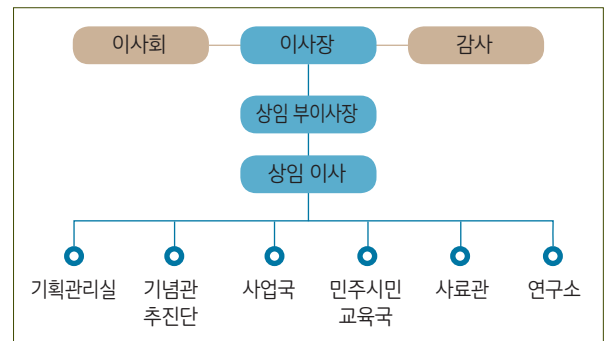
◎ 기념재단의 위상 제고와 조직 확대

- 첫째,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기념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념사업을 연계하면서 계승사업으로 이끌 구심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 설립·운영 중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해야 함

- 현재 기념재단은 기념사업부, 연구조사부, 기념관운영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념사업부와 연구조사부에 각각 5명씩의 직원이 근무함
-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과 전국적인 계승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획관리, 기념사업, 정신선양(시민교육), 사료관, 기념관(기념공원) 운영, 조사연구를 전담하는 조직이 확충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꼽을 수 있음



[그림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조직도



[그림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직도

- 둘째, 동학농민혁명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조사·연구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담당할 독립적 조직과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 기념재단 내에 설립하되, 독자적인 조사·연구가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기구로 동학농민혁명연구소를 설립하고, 조사·연구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해야 함
-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으로 계승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민주주의연구소'와 같은 유형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표 4]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8년 주요 사업

| 구분 | 민주화운동·민주주의 학술 연구 | 민주화운동·민주주의 학술지원·교류·협력 |
|-----|-------------------|-----------------------|
| 사업명 |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 | 학술지 <기억과 전망> |
| | 민주화운동 용어 연구 | 민주주의 학술논문 공모 |
| | 민주화운동 서술 역사교과서 연구 | 민주주의 학술 펠로우 |
| | 한국민주주의 토대연구 | 6월 항쟁 31주년 학술토론회 |
| | 아시아민주주의 이행 연구 | 촛불시민혁명 2주년 학술토론회 |
| | KDF민주주의 리포트 | 학술기관 공동 학술행사 |
| | 수시과제 연구-민주화운동 | 시민사회 공동 학술행사 |
| | 수시과제 연구-민주주의 | 연구소 운영 및 성과 확산 |

* 자료 :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 셋째,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기념재단의 위상이 정립되고,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위상이 제고되어야 함

- 기념재단의 사업을 보면 전국 단위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

[표 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주요 사업 현황

| 구분 | 주요 내용 |
|--------|---|
| 기념홍보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각 지역 기념사업단체 정신선양 사업 지원 • 기념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운영 • 기념재단 소식지 발간 및 홍보 : 녹두꽃 '웹진' 발간(연 4회, 계간지) • 기념재단 알리미 사업 : 기념재단 각종 홍보물(브로슈어 등) 제작 |
| 연구조사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조사/수집/정리 : 동학농민혁명 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 및 확보 • 자료번역 및 자료집(국역총서 및 학술총서) 발간 •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조사 및 관련 자료의 정리 •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관련 유물의 문화재 지정 추진 • 동학농민혁명 종합정보시스템 업데이트 |
| 전시운영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 유물 및 관련도서 관리, 소장자료 도록 발간 등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 • 어린이 동학농민혁명 전시실 운영 •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홍보 • 기념관 시설 보수 |
| 기타추진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2014~2020년) • 국가기념일 제정사업 : 기념일선정위원회 개최 및 관련 업무 주관 |

* 자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의 주요사업 내용 재구성

- 전국 사업의 총괄 조직으로 기념재단의 위상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기념재단 주관으로 종합계획이 수립·추진되어야 하며, 정부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기념·계승사업이 기념재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추진체계가 갖춰져야 함

◎ 동학농민혁명 비지정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과 활용 확대

-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300여 개소 중에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은 5개소에 불과하며, 특히 국가기념일 제정 최종 후보지로 꼽힌 4개 추천일(무장기포일, 백산대회일, 황토현전승일, 전주화약일) 중에서 3개 추천일(무장기포일, 백산대회일, 전주화약일)과 관련된 유적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표 6]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국가문화재 지정 현황

| 구분 | 지정번호 | 지정일시 | 비고 |
|-----------|----------|------------|------------------|
| 정읍 전봉준 유적 | 사적 제293호 | 1981.11.28 | 생가 → 고택 |
| 정읍 황토현 유적 | 사적 제295호 | 1981.12.10 | 최초 승전일(전라 감영군) |
| 공주 우금치 전적 | 사적 제387호 | 1994.03.17 | 동학농민혁명 최대 전투 |
| 장성 황 룡 전적 | 사적 제406호 | 1998.06.20 | 정부군 상대 승전(장태 활용) |
| 장흥 석대들 전적 | 사적 제498호 | 2009.05.11 | 지역 동학농민군과 관군·일본군 |

-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300여 개소의 유적 중에서 국가 사적은 고사하고 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만 해도 250여 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됨

-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전수조사하고, 각 유적을 대상으로 시급성, 원형보존성, 역사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야 함

- 문화재 지정은 지정문화재의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 법적·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관리 차원에서 가장 선행되는 방안임

- 유적지의 성격을 규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유적지 자체에 대한 지표조사나 발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등을 개최해야 함

◎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브랜드 전략 필요

-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에서 한발 더 나아가 브랜드로서 동학농민혁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함

국가기념일 제정과 국가기념식 개최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방향 모색

- 지역 브랜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3요소(Reality, Identity, Image) 중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에 가까운 브랜드 리얼리티(Reality)보다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Identity)가 중요한데(문화체육관광부, 2003), 즉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보다 일반인에게 심어주고 싶은 기획된 상(像)이 필요함
-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서는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려는 기획된 상, 특히 가슴 뜨거운 분노와 자긍심을 기반으로 하는 감성적 사업을 위한 브랜드가 필요하며, 동학농민혁명의 브랜드 정체성으로서 ‘한국민주주의 뿌리’를 고려할 수 있음
 - 지금까지 기념사업은 혁명의 대의를 인식하게 만들었으나 “가슴 뜨거운 분노와 자긍심 그리고 그에 기반한 감성적 기념사업”(원도연, 2007)에는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인 대상의 감성적 계승사업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 국가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동학농민혁명을 첫째,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 둘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 운동, 셋째, 우리나라 최초의 반외세 민족주의 운동으로 정의하면서,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함
- 한국민주주의 뿌리로서 동학농민혁명을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정부인식 전환과 더불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함
 - ‘한국민주주의’와 관련된 법률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르면 ‘한국민주주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인 1960년 2·28대구민주화운동부터 포함되며, 이전에 있었던 3·1운동 및 동학농민혁명, 독립운동, 임시정부활동 등은 한국민주주의에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음

[표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민주화운동’의 정의

제2조(정의)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한국민주주의’ 또는 ‘민주화운동’이 동학농민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정부정책에서 ‘한국민주주의의 뿌리로서 동학농민혁명’이 바로 설 수 있음

◎ 전국 단위 시민교육(정신선양) 중심의 사업 진행

- 지금까지 기념사업은 지역별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중심이었으나, 현대적 계승사업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시민교육에 집중해야 함
- 향후 계승사업이 특정 장소에 예산이 투입되는 방식(예, 기념공원 조성, 기념시설 건립)에 집중하면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잠잠해진 지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으므로, 특정 장소를 지정하지 않는 정신선양 사업이 중요함
 -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부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현대적 의의(한국민주주의 뿌리)를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이 시행되고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이 아닌 반외세 반봉건을 외친 ‘동학농민운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는 것 역시 정신선양사업의 시급한 과제임

[참고문헌]

김양식, 2019,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의의”, 『전북학연구센터 개소식 및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기념 공동세미나』, 27-35.

문화관광부, 2003,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가치 제고전략』.

원도연, 2007,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사회성과 기념공간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0(1): 261-288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
www.jthink.kr

ISSUE BRIEFING
2019. 05. 20 Vol. 195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취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